

#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1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11.14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평창군 주요사업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집중 추진을 위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한시정원 : 현안사업추진과장(5급)

1) 존속기한 : 2024. 1. 1. ~ 2025. 12. 31.(2년)

2) 연장기한 : 2026. 6. 30.(6개월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5. 10. 2. ~ 2025. 10. 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평창군 공고 제2025-1444호, 행정담당관-23423(2025. 10. 1.)호
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16817(2025. 10. 29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16817(2025. 10. 29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38721(2025. 10. 23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17347(2025. 11. 5.)호]
- 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17900(2025. 11. 13.)호]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2897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 
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6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 발취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 (생략)

## 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
2.~ 5. (생략)

② ~⑤ (생략)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담당관 이시균
연락처	(033) 330 - 2210